

GT(Global Talent)교육실현으로 미래 사회 인재를 육성하는

# 꿈자람, 희망키움

## 2022 온라인 학부모 총회



금 계 초 등 학 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90 (백석동)  
<http://www.gygg.es.kr>



## 온라인 학부모 총회 계획

활동내용	시간		주요 내용	담당	장소
	1~2학년	3~6학년			
회의실 개설 및 학부모 입장	13:25~ 13:30	14:55~ 15:00	*5분 전 각 학급 ZOOM 회의실 개설	담임	ZOOM
학교장인사	13:30~ 13:35	15:00~ 15:05	*학교장 인사	교장	영상
청렴연수	13:35~ 13:40	15:05~ 15:10	*청렴 연수	교감	영상
학교교육 설명 및 학부모연수	13:40~ 14:10	15:10~ 15:40	*학교 현황 및 교육활동 안내	교무	영상 및 홈페이지
			*출결 관련 안내 및 학사일정		
			*교권 보호		
			*혁신학교 운영	혁신 연구	
			*공교육 정상화법 및 선행교육 금지		
			*학생 평가 계획		
			*학교 안전 교육	안전	
			*학교폭력·자살예방(생명존중)교육	생활인권	
			*학생 인권 연수		
			*아동학대·성폭력·가정폭력예방 연수		
			*반부패 청렴교육(불법찬조금지)		
			*정보통신 윤리 및 사이버 중독 예방	정보	
			*방과후 학교 운영 안내	방과후	
			*특수 및 통합교육 안내	특수	
			*WeeClass 이용 안내	상담	
2021 학부모회 활동보고 및 결산			*2021 학부모회 활동 및 결산 보고	학부모 회장	영상
2022 학부모회 임원 및 학운위 위원 선출			*2022 학부모회 임원 및 학운위 위원선출 안내	선출관리 위원장	영상
학급 담임과의 만남			*학급 운영 오리엔테이션	담임	ZOOM
금계초 교육활동 지원단 구성	14:10~	15:45~	*학급 대표 선출 (학년대표는 추후 선출) *각 해당 영역별 지원단 구성	담임	ZOOM



# 학교 현황

## 가 학교 위치

(우) 1042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90 : <http://www.gygg.es.kr>

## 나 학교 연혁

년 월 일	연 혁 개 요
1994. 09. 26	금계초등학교 설립 인가
1995. 03. 01	금계초등학교 개교(10학급 편성-264명) 초대 안병두 교장 부임
1995. 03. 04	10학급 편성(356명)
1996. 02. 14	제1회 졸업(79명)
1997. 03. 02	병설유치원 설립(1학급 40명)
1998. 03. 01	교육인적자원부지정 귀국학생 특별학급 시범학교 운영(1998~1999)
2000. 03. 01	경기도교육청지정 귀국학생교육 시범학교 운영(2000~2007)
2016. 09. 01	병설유치원 2학급 편성(22명)
2016. 10. 19	학교 증축 개관식(38학급)
2020. 03. 01	제 9대 이경하 교장부임
2021. 10. 01	일산병원 초등병원순회학급 1학급, 유치원병원순회학급 1학급 편성
2022. 01. 04	제 27회 졸업식(80명, 누계:3,270명)
2022. 03. 01	초등 25학급 편성(특별학급 1학급, 특수학급 1학급, 순회학급 1학급 포함, 신입생 85명, 총 549명) 병설 유치원 3학급 편성(순회학급 1학급 포함, 총 12명)

## 다 학교 현황

학년	유치원	유치원 병원 순회 학급	일반학급						특별 학급	특수 학급	초등 병원 순회 학급	계 (초등)
			1	2	3	4	5	6				
학급 수	2	1	3	4	3	4	4	4	1	1	1	28(25)
학생수	남	16	49	49	37	62	35	42	8	3		287(271)
	여	6	39	52	45	39	52	49	7	1	2	285(278)
계	22	1	85	101	82	101	87	91	15		2	572(549)
급당 평균인원	11		28.3	25.3	27.3	25.3	21.8	22.8	15	4		

구 분	교 원					일 반 직					계
	교장	교감	부장	교사	소계	행정실장	행정직	시 설 관리직	교 육 공무직	소계	
정 원	1	1	8	27	37	1	2	1	15	19	56
현 원	남	1	1	5	1	8	1	1	1	3	11
	여			3	26	29			14	16	45
계	1	1	8	27	37	1	2	1	15	19	56

교 지	건축면적	체육장
12,578.8㎡	14,218.04㎡	3,297.06㎡

교 실 현 황	일반교실		관리실				특별교실				지원시설				특수/보건			유치원		기타		계			
	도 널 교 실	교 사 실	교 장 실	교 무 실	교 의 실	교 사 실																			
38	5	1	1	1	1	1	1	1	1	4	4	2	6	3	1	2	1	1	1	1	3	5	3	19	112



## 학교장 철학 및 교육공동체 비전

사랑이 샘솟는 학교,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 ☀ 학교장 철학 ☀

기초·기본 교육을 바탕으로

인성·창의·재능 교육의 실현을 통한 창의인재 육성과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가꾸는데 있다.



# 교육 목표 구현 체계 및 과제 선정



꿈 사람, 희망 키움의 GT(Global Talent)교육 실현 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 육성



## 경영중점

1. (스스로 익히고 함께 찾는 배움중심교육) 즐겁게 배우고 창의력이 풍부한 학생
2.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인간교육) 서로를 존중하고 인성이 바른 학생
3. (꿈과 적성을 키워가는 진로교육)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행복을 가꾸는 학생
4. (소통과 어울림이 있는 교육공동체 운영) 다양한 가치를 이해하고 정성과 노력으로 재능을 키우는 학생



스스로 익히고 함께 찾는 배움중심교육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인간교육	꿈과 적성을 키워가는 진로교육	소통과 어울림이 있는 교육공동체 운영
11. 학생중심 교육과정 12. 학생평가시스템 개선 13. 독서 토론, 한자 교육 14. 교원 역량 강화	21. 민주시민 자치교육 22. 공동체 의식 함양 23. 소통과 나눔의 학교문화 24. 교육 환경의 개선	31. 체육교육의 내실화 32. 학생 건강관리 강화 33. 개성과 소질 계발 교육 34. 안전한 학교 만들기	41. 글로벌 소양 교육 42. 외국어 교육 강화 43. 돌봄이 있는 학교 44. 교육행정시스템개선



중점 교육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인간교육

다정다감 마음 탄탄

- 다정 - 정다운 행동
- 다감 - 감동 주는 대화

스스로 익히고 함께 찾는 배움중심교육

다독다독 생각 탄탄

- 다독 - 책과 함께 기본을 성장하는 어린이
- 다독 - 즐겨 찾는 도서관

꿈과 적성을 키워가는 진로교육

다재다능 몸 탄탄

- 다재 - 건강한 신체 활동
- 다능 - 함께 성장하는 재능 키우기

소통과 어울림이 있는 교육공동체 운영

다·갈·이 GT(Global Talent) 지구인

- 다 - 다른 문화 익히기 (다문화 교육)
- 갈 - 같이 체험하기 (귀국학생 교육)
- 이 - 이쁘게 살아가기 (세계시민 교육)



# 출결 관련 사항 안내

금계초등학교

## ◆질병 결석(근거: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 교육부훈령 제393호)

구분	기준	제출 서류
지각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의 등교 본교 등교 시간:오전 9시00분,*코로나19에 의한 학사일지에 따라 변동 가능	
조퇴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의 하교	
질병 결석	◦ 학생의 각종 질병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 (단,법정 감염병으로 등교중지된 경우는 출석 인정)	결석계 의사 확인서 등
미인정 결석	◦ 결석 인정 사유로 해당하지 않거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태만,가출,고의 출석 거부,법범행위 도피 등)	★사안 발생 시 담임교사 문의
기타 결석	◦ 질병 결석 사유를 제외한 학교장 인정 합당한 사유	

※결석계 제출서식은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음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는 결석은 생활기록부에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2일 이내의 질병결석은 질병임을 증명하는 자료(예:투약 봉투 등)와 함께 결석계(보호자 의견서첨부) 제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담임교사와 전화상담 요망(담임교사의 확인서 작성을 위함)  
 ※3일 이상의 연속 장기결석은 질병임을 증명하는 별도의 의사 확인서를 결석계와 함께 제출  
 ※질병 결석이 아닌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결석 시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출석이 인정되는 결석

### 1.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종류	내용	절차	인정 일수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국내·외)	◦가족 여행 ◦경·조사 참석 ◦친·인척 방문 ◦견학 활동 ◦각종 체험 활동 ◦가정학습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신청서 2일전 사전 제출(보호자 신청)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는 1일전 까지 온라인,문자 등을 통한 신청서 제출 가능 ◦신청서 승인(학교장) ◦현장체험학습 실시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사후 3일 이내 제출 ◦담임의 출석 처리 결정	20일 (학칙에 의거)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57일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사 용가능

※서식은 학교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음, 가정학습은 가정학습 신청 양식을 사용하여 신청  
 ※체험 학습을 마치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결석처리 될 수 있음  
 ※학칙에 의거하여 정해진 일수(20일)를 초과한 체험학습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함

### 2.경조사 사안으로 인한 결석(근거: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별표8)

구분	대상	일 수
결혼	◦형제,자매,부모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조부모,외조부모	5
	◦증조부모,외증조부모	3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경조사 사안 발생일 전·후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 일수 내에서는 출석인정 가능

## ◆ **코로나19와 관련된 사안으로 결석하는 경우에 대한 안내는 3월3일 발송된 e-알리미 가정통신문 참고**



# 2022학년도 학사 일정 안내

2022학년도							1학기 100일, 2학기 90일														금계초등학교						
2022.3(21)							4(21)							5(20)							6(20)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1	2	1	2	3	4	5	6	7				1	2	3	4
6	7	8	9	10	11	12	3	4	5	6	7	8	9	8	9	10	11	12	13	14	5	6	7	8	9	10	11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5	16	17	18	19	20	21	12	13	14	15	16	17	18
20	21	22	23	24	25	26	17	18	19	20	21	22	23	22	23	24	25	26	27	28	19	20	21	22	23	24	25
27	28	29	30	31			24	25	26	27	28	29	30	29	30	31					26	27	28	29	30		
*2일 시업식, 입학식, 급식X *7~11 진단활동 주간 *10 1학기 학급임원선거 *14~18 인권, 안전, 친구사랑주간 *17 학교설명회, 학부모총회 *24~30 학부모상담주간							*4~8 과학행사, 꿈끼진로주간 *11~15 독도사랑주간 *18~22 생명존중, 장애이해 *25~5.4학년군별 놀이축제							*2~4 효체험주간 *18 학부모공개수업 *23~27 국제이해주간							*5/30~6/4 통일교육주간 *6/13~17 생태환경교육주간 *6/20~24 호국보훈주간 운영						
*1일 삼일절 *9일 대통령선거일														*6일 학교장재량휴업일 *5일 어린이날							*1일 지방선거일 *6일 현충일						
7(18)							8(9)							9(18)							10(19)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1	2	3	4	5	6					1	2	3							1
3	4	5	6	7	8	9	7	8	9	10	11	12	13	4	5	6	7	8	9	10	2	3	4	5	6	7	8
10	11	12	13	14	15	16	14	15	16	17	18	19	20	11	12	13	14	15	16	17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1	22	23	21	22	23	24	25	26	27	18	19	20	21	22	23	24	16	17	18	19	20	21	22
24	25	26	27	28	29	30	28	29	30	31				25	26	27	28	29	30		23	24	25	26	27	28	29
31																					30	31					
*6 교육과정워크숍 *14 2학기 전교임원선출 *26 여름방학식, 급식X *27~8/18 여름방학, 23일간							*19일 여름개학식, 급식 실시 *25 2학기 학급임원선거							*5~16 책축제, 친구사랑, 정보통신주간 *19~23 학부모상담주간 *26~30 생명존중, 학생대토론회주간							*현장체험학습 1학년(19일), 2학년(20일), 3학년(21일) 4학년(14일), 5학년(18일), 6학년(17일) *14~28 독도사랑주간 *27 지구마을 축제						
							*15일 광복절							*8일 학교장재량휴업일 *9~12일 추석연휴 *13일 학교장재량휴업일							*3일 개천절 *10일 한글날 대체휴일						
11(22)							12(22)							2023. 1(0)							2023. 2(0)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1	2	3	1	2	3	4	5	6	7				1	2	3	4
6	7	8	9	10	11	12	4	5	6	7	8	9	10	8	9	10	11	12	13	14	5	6	7	8	9	10	11
13	14	15	16	17	18	19	11	12	13	14	15	16	17	15	16	17	18	19	20	21	12	13	14	15	16	17	18
20	21	22	23	24	25	26	18	19	20	21	22	23	24	22	23	24	25	26	27	28	19	20	21	22	23	24	25
27	28	29	30				25	26	27	28	29	30	31	29	30	31					26	27	28				
*3,4 학예회 *7~11 인권, 학교폭력예방, 생명존중교육주간 *8 외국어문화발표회							*6 한자오름길 *7 교육과정워크숍 *12~16 꿈끼탐색주간 *15 2023 전교임원선출 *30 종업식, 졸업식, 급식X *31~2.28 겨울방학, 60일간														*20~24 신학기준비집중기간						
							*25일 성탄절							*21~24일 설연휴													

\*상기 일정 및 행사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교권 보호

## 근거

- 『교육기본법』 제2장 제12조
-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 교권에 대한 이해

- 교권(敎勸)** : 교사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활동을 해나감에 있어서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받고 학생을 자유로이 가르치고 지도하는 권위를 인정받는다.
-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는 교육할 권리를 갖으며 전문직 종사자로서 법률을 통하여 일정한 권리를 보장받는다. 이는 통상 교사의 교육권 또는 수업권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교육과정 편성권, 교과서 작성권, 교재 채택 및 선정권, 교육내용 결정권, 교육방법 결정권, 평가권, 학생지도 및 징계권 등을 포함한다.
-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바 교사 역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행복추구권을 향유할 수 있다.

## 교권 침해란?

- '교권침해'란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에 대한 교육행정기관, 학교행정가, 동료 교원, 학부모, 학생 등의 침해로 정의할 수 있다.
- 교원이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보호자 등에 의한 폭언·폭행·성희롱·명예훼손·협박·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인해 교육할 권리를 침해받는 것을 말한다.

## 교권 침해의 유형

학생에 의한 침해 유형	학부모에 의한 침해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업권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업시간에 소란스럽게 돌아다니는 행위</li> <li>- 수업시간에 떠들거나 수군대는 행위</li> <li>- 교사의 목소리, 행태 등에 반정거리는 행위</li> <li>- 수업과 관련 없는 질문으로 수업의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li> <li>- 비스듬히 앉아서 교사랑 눈싸움하는 행위</li> <li>- 책, 노트 등을 준비하지 않고 빈 가방으로 등교하는 행위</li> </ul> </li> <li>■ 교사에 대한 폭력, 성폭력이 우려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당한 지시에 대한 폭력 행사</li> <li>- 여교사의 속치마 촬영, 강제로 어깨동무하는 경우</li> <li>- 인터넷에 합성 음란물 사진 유포</li> <li>- 학급 카톡에서 특정 교사를 놀리는 행위</li> </ul> </li> <li>■ 교사의 지시 무력화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힘이 센 학생들이 사주하여 교사의 지시 거부, 인사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의 인격권 침해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언하거나 폭행하는 경우</li> <li>- 사이버상에 교사를 비방 행위(카톡, 밴드)</li> <li>- 사생활(이혼, 이성문제 등)을 다른 학부모에게 유포하는 행위</li> <li>- 수업 형태, 생활지도를 비하하는 내용을 유포</li> <li>- 전화, 이메일, SNS 등을 통한 폭언, 협박 등</li> </ul> </li> <li>■ 교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무실, 교실에서 폭력, 재물을 파손하는 경우</li> <li>- 시험 출제 경향의 요구, 수행평가 점수를 올려달라는 행위 등</li> <li>- 생활기록부의 부당한 정정, 기록을 요구하는 경우</li> <li>- 안전사고 피해 시 학부모의 부당한 협박이나 민원 제기</li> <li>-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부당한 협박, 욕설</li> </ul> </li> </ul>

## 바람직한 학부모 학교 참여 방법

내 자녀만 미워한(불이익을 받는)다고 느끼는 경우	내 자녀가 부당한 차별을 당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 자녀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li> <li>■ 주변 친구들에 확인하는 등 객관적으로 이해</li> <li>■ 담당부장 및 교감(교장)과 상담</li> <li>■ 교육청 담당 장학사에게 도움 요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별 증거 자료를 확보한 후</li> <li>■ 차별 동기 및 정황을 확인</li> <li>■ 교감(교장)과 상담한 후에 조치 요구</li> <li>■ 학생인권옹호관 또는 지역교육청 담당 장학사에게 도움 요청</li> </ul>

서로를 존중할 때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 혁신학교 운영

금계초등학교

## 1. 혁신학교 교육 활동

가. 혁신학교 지정 운영 : 2019.03.01.~2023.02.28. (4년간)

나. 학생 중심 혁신교육활동

학년	빛깔있는 교육과정	문화예술감성교육 스포츠교육	악기교육
1	체험 중심 놀이교육 통합교육과정 운영	도예, 국악, 스포츠올동	소고
2	문화다양성교육 동화책활용교육	도예, 국악, 생활무용	소고
3	회복적생활교육 독서토론교육	도예, 국악, 미술회화, 안전수영	칼림바
4	회복적생활교육 지역문화유산교육	도예, 국악, 태권무, 안전수영, 스포츠클럽(탁구)	칼림바
5	진로교육 역사교육	도예, 국악, 뮤지컬 스포츠클럽(티볼)	장구
6	소프트웨어교육(로봇) 보드게임활용교육	도예(타일), 국악, 방송댄스, 로봇	장구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로 프로그램 운영</li> <li>-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li> <li>- 저학년 학교적응활동 운영</li> <li>- 학년, 학급, 전담교사 교육과정 운영 지원</li> </ul>		

다. 혁신 인성교육 활동

- 1) 학생 자치회 및 또래 중조 활동 운영
- 2)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실 운영 지원(wee class)
- 3) 바른 꿈 키우기 인성교육을 위한 진로프로그램 운영 지원
- 4) 학급별 다양한 인성교육활동을 위한 교사교육과정 운영비 지원
- 5) 두드림 학교 운영 지원을 통한 부진 아동 자존감 향상 활동 지원
- 6) 독서캠프 및 각종 도서관 활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인적 성장의 계기 마련



# 공교육 정상화법

금계초등학교

## 1. 공교육정상화법의 목적

-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
-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함.

## 2. 용어의 정의

구분	선행교육	선행학습
주체	교육관련기관	학습자
정의	교육관련기관이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에 앞서 하는 학습

### ※ 선행교육의 의미

Q.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는 1~2, 3~4, 5~6 학년군임.

- 앞서서 편성하는 경우란 초등학교는 학년군을 앞서서 교육 과정을 편성하는 것임.
- 앞서서 제공하는 경우는 계획된(편성된) 학교교육과정에서 학기, 학년(군) 또는 학교급을 앞서서 운영하는 것임.

## 3.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교의 책무

- 1) 교육과정에 충실한 학교교육
  - 연간 교과지도 계획에 따라 운영하고 정상적 수업활동만으로 성취기준에 도달하도록 함.
- 2) 선행교육을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 교과협의회, 학년협의회, 학교교육과정위원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등 학교 내 기구들을 활용하여 감독
- 3) 선행교육 예방 계획의 수립과 시행
  - 교원, 학생, 학부모 대상 연수 연 1회 이상 실시
  - 교육과정 편성 운영, 평가 계획 등을 학교알리미 및 학교 홈페이지에 공시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한 수업 금지
  -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한 수업 금지

#### 4.

###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관련 선행교육의 판단 기준

구분		법령에서 금지하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선행교육 (교육 과정 편성·운영)	재학생	앞서서 편성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을 앞서는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경우
		앞서서 제공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학교교육과정을 운영(제공)하는 경우
	입학예정 학생	입학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후 학교교육과정을 미리 운영하는 경우

#### 5.

### 평가 관련 선행교육의 판단 기준목적

구분		법령에서 금지하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평가	재학생	교과 평가 (지필·수행평가) 학교교육과정에 따라 편성한 교과별(학년별) 진도계획을 앞서서 평가하는 경우
		각종 교내대회 ( 배운 범위와 수준을 앞서는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입학예정 학생	입학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상급학교(입학예정 학교)의 학교교육과정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 6.

### 적용 예외

-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 교육원)의 **영재교육**
-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 **적용 배제 교과** : 체육·예술 교과(군), 기술·가정 교과(군), 실과·제2외국어·한문·교양 교과(군), 전문 교과
-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  
: 2019년 3월 26일 공교육정상화법 일부 개정을 통해 적용 예외에 포함됨. 초등학교 1~2학년에 놀이·활동, 음성언어 중심의 영어 방과후학교 운영이 가능함.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놀이·활동, 음성언어 중심의 영어 관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음.(공교육정상화법 제16조 4항)
-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에서 학교 휴업일 중 편성·운영되는 방과후학교 과정과 농·산·어촌 지역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sup>1)</sup>의 중·고등학교에서 편성·운영되는 방과후학교 과정에서의 선행교육을 허용함.(2025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 적용)

1) \*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제2조의2)

- 전년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학생 수의 합계가 70명 이상이거나 총 재학생의 10퍼센트 이상인 학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의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교육 기회의 균등 및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학생

- 교육감이 지역 여건 등에 따라 교육 기회의 균등 및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시·도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밀집학교 등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학교



# 학생 평가 계획

금계초등학교

## 1.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 가. 기본 방침

- 1) 학생 평가는 학생의 전면적 발달을 돕기 위하여 실시하며 참된 학력 신장에 중점을 둔다.
- 2) 학교는 지역 실정 및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학교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 성장중심평가를 실시한다.
- 3)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등을 제고하여 교사별평가를 실시한다.
- 4)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논술형 평가를 포함한 다양한 수행평가 방법으로 실시한다.
- 5) 학생의 자아개념, 가치관, 태도, 흥미, 책임, 협력, 동기 등 정의적 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 6) 학생들의 동료이해, 의사소통, 상호조절, 참여의식, 책임의식 등 협력적 문제 해결력 평가를 실시한다.
- 7)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한다.(선행학습 금지)

### 나. 평가방법

- 1) 결과 중심 평가에서 과정 중심 평가로 전환하고, 주관식의 비중을 확대한다.
- 2) 서술형, 논술형 평가 비중을 높인다.
- 3) 실기, 실험, 논술 평가, 면접, 보고서 포트폴리오, 자기 평가, 상호 평가 등 평가 방법을 다양화하고 수시로 평가한다.

### 다. 교과 평가 계획

#### 1) 평가 개요

평가 유형	시기	대상	내용	비고
진단활동 주간	3월	2-6학년	▶ 2-6학년 : 학습면(국어, 수학), 생활면 ▶ 학습 부진아 판별 및 담임 책임의 보충학습 지도 ▶ 학습 지도 방향 설정 및 교수-학습의 기초 자료로 활용	특별 보충과정 운영
상시 평가	수시	1-6학년	▶ 성취기준에 근거한 평가 ▶ 수업 중 교사별 상시 평가 ▶ 논술, 면담, 실기,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방법 적용 ▶ 정의적 능력 평가(자아개념, 가치관, 태도, 흥미, 책임, 동기 등) ▶ 협력적 문제해결력 평가(동료이해, 의사소통, 상호조절, 참여의식 등)	교사별 평가
입문기	4월	2학년	읽기, 쓰기, 셈하기	
진단검사(3R's)	11월	1학년	읽기, 쓰기, 셈하기	
기초학습부진 진단평가(3R's)	4월	3~6학년	1차 기초학습 부진 진단 및 판별	
	6월	1차부진학생	2차 기초학습 부진 판별	
	9월	2차부진학생	3차 기초학습 부진 판별	
교과학습부진	3월	4~6학년 단활동	1차 교과학습 진단 및 판별	
	6월	1차부진학생	1차 향상도 검사(진단보정시스템)	
	9월	2차부진학생	2차 향상도 검사(진단보정시스템)	
	12월	3차부진학생	3차 향상도 검사(진단보정시스템)	

#### 2) 교사별 평가

- 가) 시기 : 연중 (교과 수업시간 중에 실시함을 원칙)
- 나) 교과 : 전교과
- 다) 대상 : 전학년

#### 라) 평가 내용

- 학습의 결과뿐만 아니라 학습의 과정까지 평가하며 모든 학생이 교육목표에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교사가 가르친 내용을 평가하며, 교수·학습활동과 평가가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다양한 정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찾아나가는 과정, 이미 주어진 지식을 활용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평가를 지향한다.
-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능을 사회적 삶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생활과 관련된 평가 장면을 활용한다.
- 학습의 과정 중에 다양한 평가를 통해 학생이 직면한 문제를 동료와 함께 발견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협력적 문제 해결능력을 신장한다.

#### 마) 평가 방법

- 선택형 및 단순 지식 암기식 평가를 지양하고 핵심역량과 정의적 능력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
- 학습자들의 학습과제 수행 과정 및 결과를 논술형, 구술, 토의·토론, 실험·실습,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정의적 능력 평가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적용하며 학생 수준에 적합한 평가 실시

#### 바) 평가 처리 및 활용

- 평가 산출물과 평가 결과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
- 논술형(교사 출제형) 문항 평가 결과는 출제자가 평가지에 채점 및 첨삭하여 채점이 완료된 형태의 평가지를 가정 통지하여 학생 성장을 위한 피드백이 되도록 하고 회수하여 보관
- 모든 평가의 결과는 적기의 피드백을 통하여 학생 발달 도움

## 2.

### 행동발달상황 평가

#### 가. 목 적

학생활동의 전반적인 행동영역을 정의적 영역 중심으로 행동발달과정과 계속성을 수시로 관찰하여 학생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개선시키는데 필요한 지도 자료로 활용한다.

#### 나. 평가의 방침

- 1) 학생을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행동 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문장으로 입력하여 학생에 대한 일종의 추천서 또는 지도 자료가 되도록 작성한다.
- 2) 장점과 단점은 누가 기록된 사실에 근거하여 입력하되, 단점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변화 가능성을 함께 입력한다.
- 3) 행동특성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 3.

### 기타 사항

- 1) 결시한 학생은 추후 개별적으로 평가에 응시하도록 하며, 유사 내용으로 대체할 수 있다.
- 2) 장기무단결석으로 인하여 학습과 평가활동에 오랫동안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필 및 수행평가 해당 영역에(사유 - 장기결석으로) 인한 평가내용 없음'으로 기록한다.
- 3) 교사별 평가 실시는 담임 재량에 따라 재도전의 기회를 줄 수 있다.
- 4)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에서의 학생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확인하여 평가하고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으며, 직접 관찰·확인하지 못할 경우 등교수업에서 평가하고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다.(단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일 경우 교사가 관찰 확인한 내용과 원격수업 내용을 포함하여 기록할 수 있다.)



# 학교 안전 연수

금계초등학교

## 교통안전

### □ 스쿨존 내 학생 교통사고 사례 : 아이들은 잘 뛰어다녀요



무단횡단을 하는 어른을 보고 따라하는 경우



초록불이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뛰어드는 경우



인도가 없는 이면도로를 지다가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 주정차된 차 앞을 지나가는 경우



통학버스 또는 부모님 차량에서 내려 급하게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경우

### □ 집이나 학교 주변 위험 사례 : 아이들은 몸집이 작아 잘 안보여요



차도로 굴러가는  
공을 쫓아가는 아이  
↳ 어른의 도움을 받도록 함



차 밑에서 공(물건)을  
빼고 있는 아이



차 뒤에서 놀고 있는  
아이  
↳ 위험한 장소에서 놀지 않도록 함



공사장 옆에서 놀고  
있는 아이

### □ 사고 발생 시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b>최초 발견자</b>	119 신고 및 사고 2차 피해 방지 학교 교직원(담당교사 등)에 즉시 연락 ※ 어린 학생들은 사고가 나면 혼이 날까봐 얘기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경미한 사고라도 꼭 선생님 또는 부모님께 연락하고 치료를 받도록 해요.
---------------	---

# 재난안전

## □ 학교 재난 발생 사례

	
<p>화재</p>	<p>수상한 사람이 학교에 진입(테러, 유괴 등)</p>
	
<p>지진</p>	<p>폭발, 붕괴 등</p>

## □ 재난 발생 시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p>화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재발생 최초 목격자는 "불이야!"하고 외치고 비상벨을 누른 후, 119에 신고(담당교사에게 즉시 연락)</li> <li>○ 초기 진화가 가능한 경우, 소화기(소화전 등)을 이용하여 진화 시도(단, 개인의 안전과 학생 대피 우선)</li> <li>○ 건물 안에서 대피할 때에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신속히 대피(승강기는 질식 우려, 계단 이용)</li> </ul>
<p>테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방문자는 반드시 방문대장 기록 및 방문증 수령</li> <li>○ 폭발물이 의심되는 수상한 가방은 열어보지 말고 112에 신고(담당교사에게 즉시 연락)</li> <li>○ 테러범 발견 시 112 신고, 교내에 즉시 알람(개인의 안전 확보 필수)</li> </ul>
<p>지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진 발생 시, 가방 및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li> <li>○ 건물 안에 있을 시, 머리를 보호하며 운동장으로 대피(계단 이용)</li> <li>○ 건물 밖에 있을 시, 떨어지는 물건에 대비 머리를 보호하고 건물과 거리를 두고 넓은 공간으로 대피</li> <li>○ 엘리베이터 안에 있을 시,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린 후 계단으로 이동</li> <li>○ 해안에서는 해일에 대비하여 높은 곳으로 이동</li> </ul>
<p>폭발 붕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발물 및 붕괴 위험 시설물 발견 시, 즉시 교육행정실 또는 담당교사에게 연락(개인의 안전 확보 필수)</li> <li>○ 유리 파편이나 낙하물에 대비하여 머리와 얼굴을 보호</li> <li>○ 부상자는 추가 폭발, 붕괴 등 2차 피해에 대비하여 가능한 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 후 응급처치(119 신고, 담당교사 연락 등)</li> </ul>

# 생활안전

## □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이렇게 대처하세요

<p><b>여름철 폭염</b></p>		<p>&lt;폭염 대비 3대 건강 수칙&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 자주 마시기</li> <li>○ 시원하게 지내기(그늘, 실내 등)</li> <li>○ 더운 시간대에 휴식하기</li> </ul>
<p><b>겨울철 빙판길</b></p>		<p>※ 학교 정문 및 진입로에 빙판길 발견 시에는 학교 담당 교직원에게 연락하여 안전사고에 예방합니다.</p> <p>&lt;행동요령&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기</li> <li>○ 장갑을 끼고 손을 주머니에 넣지 않기</li> <li>○ 평소보다 보폭을 10~20% 좁게 걷기</li> </ul>
<p><b>봄철 미세먼지</b></p>		<p>&lt;행동요령&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일 아침 기상상황 확인</li> <li>○ 외출 시 마스크 착용, 외출 후 손과 얼굴 씻기</li> <li>○ 충분한 수분 섭취</li> </ul>
<p><b>여름 및 가을 호우, 태풍</b></p>		<p>&lt;행동요령&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물 파손이나 누수 발견 시, 담당교직원에게 연락</li> <li>○ 집중호우 또는 태풍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인 웅덩이, 낙하물 등에 유의</li> <li>○ 걷는 중에는 스마트폰 사용 자제, 주변 경계</li> </ul>
<p><b>응급처치</b></p>		<p>※ 학교에서 쓰러져있거나, 크게 다친 사람을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담당교직원에게 반드시 연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정의 응급처치교육을 받아 응급처치가 가능하다면 아래의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상황에 따라 조치하고, 그렇지 않다면 119 또는 학교 교직원의 도움을 받음</li> </ul> <p>&lt;응급처치 시 주의사항&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한다.(2차 피해, 상황에 대한 오해의 소지 등)</li> <li>○ 응급 상황일 때는 즉시 119에 연락한다.</li> <li>○ 함부로 물이나 음식물, 약을 먹이지 않는다.</li> <li>○ 환자에 대한 생사의 판정을 하지 않는다.</li> <li>○ 환자의 몸에서 나온 구토물이나 혈액 등이 자신의 몸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li> <li>○ 환자를 안전한 지역으로 옮기되, 이로 인해 2차 손상이 우려될 경우에는 옮기지 않는다.</li> <li>○ 최종적으로는 전문 의료인의 처치에 맡긴다.</li> </ul>
<p>※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신고 방법(환자의 상태가 위급할 때 즉시 119에 도움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달 내용 : 사고 장소(가능하다면 명확한 주소), 주요 건물, 사고 종류, 환자 상태, 부상자 수 등 통보 (일반적으로 부상자 1명에 구급차 1명)</li> <li>○ 구급차 도착 전까지 전화로 응급처치 요령을 지도 받을 수 있음</li> <li>○ 신고 후에는 구급차 도착 전까지 연락유지를 위해 다른 통화는 자제하고 먼저 전화를 끊지 않음</li> </ul>		

출처 : 교육부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매뉴얼, 안전보건공단



# 학교폭력 예방 연수

금계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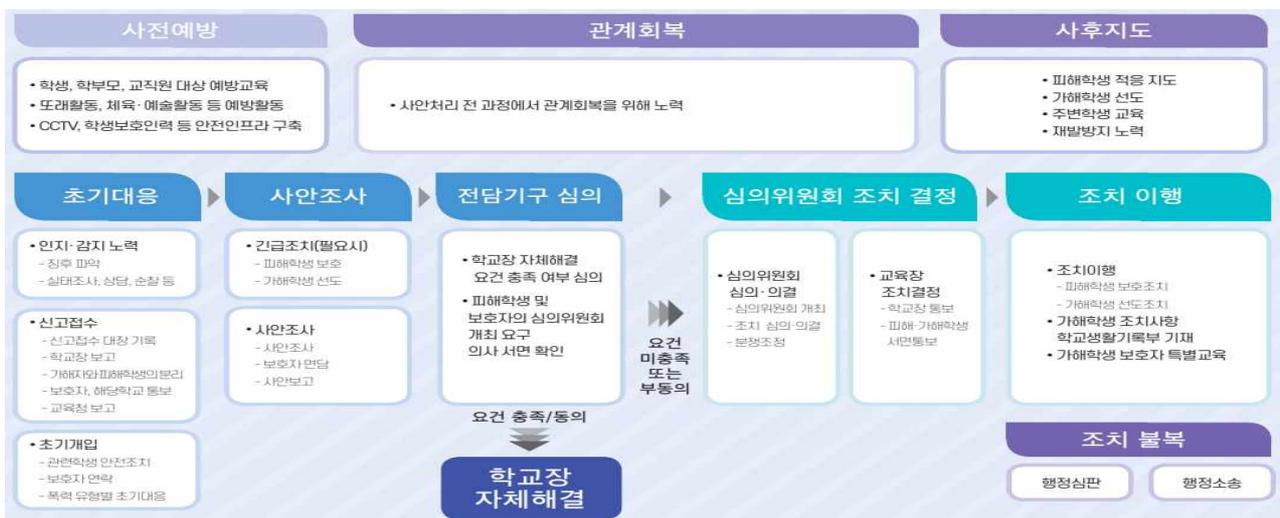
##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 2 학교폭력예방하기

자녀를 위해 이렇게 해주세요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들에게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임을 알려주세요.</li> <li>○ 매일 자녀의 학교생활과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대화를 나누세요.</li> <li>○ 휴대폰 안 쓰는 시간 약속하기 등 건강한 휴대폰 사용 습관을 길러주세요.</li> <li>○ 비싼 물건이나 전자제품 등을 학교에 가지고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li> <li>○ 자녀에게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태도를 갖도록 가르쳐 주세요.</li> <li>○ 주변 학교폭력 관련 기관 정보를 미리 알려주세요.</li> <li>○ 자녀의 담임선생님과 주기적으로 상담하세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며 차분히 대화하세요.</li> <li>○ 자녀의 말에 공감과 지지를 표현해주세요.</li> <li>○ 자녀가 말하는 학교폭력 사실에 대해 경청하며 아이가 원하는 것을 파악해 주세요.</li> <li>○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li> <li>○ 피해, 가해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사안처리를 요청해주세요.</li> <li>○ 사안처리 과정에서 학교나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해주세요.</li> <li>○ 확인되지 않은 학교폭력 사안은 확대하거나 유폐하지 말아주세요.</li> <li>○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최종목표는 자녀가 안전하게 학교에 복귀하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li> </ul>

## 3 사안 처리 절차



## 4 학교폭력으로 도움이 필요할 땐?

- ✓ 학교 담임교사나 학교폭력담당교사와 통화하기.
-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1588-9128
- ✓ 교육부 및 경찰청 학교폭력 신고 117



#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연수

금계초등학교

## 1 자살요인

- ✓ 청소년 자살은 개인적 우울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 경제공황, 가정불화 등 가정문제가 청소년을 자살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 부모님과의 갈등, 부모님의 잔소리와 꾸중이 자살충동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나타남
- ✓ 매스컴의 선정적 자살자 보도가 청소년자살을 유발시키고 있음
- ✓ 고층아파트 주거환경이 청소년 자살을 용이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 인터넷의 보급으로 자살충동을 느끼게 하고, 동반자살로 이어지는 일이 있음

## 2 자살에 대한 잘못된 상식과 진실

- 오해 1 : 자살 생각이나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경고나 단서도 없이 자살한다.(☞ NO!)
- 진실 1 : 10명 중 8명은 그들의 자살의도에 대한 경고 신호를 보낸다. 이 신호들이 무슨 뜻이며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해한다면, 그들의 자살 의도를 알 수 있다.
- 오해 2 : 자살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자살을 하지 않을 것이다.(☞ NO!)
- 진실 2 : 자살 생각이나 자살 기도는 '도움을 찾는 외침'이다. 이 외침에 반응이 없으면 주목받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시도하여 비극적인 결과로 끝맺을 수 있다.
- 오해 3 : 특별한 유형의 사람들만이 자살을 기도하거나, 자살을 하거나 혹은 자살생각을 한다.(☞ NO!)
- 진실 3 : 자살 생각, 감정, 행동들은 모든 사회 계층, 종교집단, 연령층 혹은 다양한 사회적 집단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 오해 4 : 자살은 유전된다.(☞ NO!)
- 진실 4 : 자살자의 다른 가족이 자살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유는 유전적이기 보다는 다른 원인에서 찾아야 한다.
- 오해 5 : 자살에 대해 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살률을 증가시킨다.(☞ NO!)
- 진실 5 : 직접 내놓고 자살과 자살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자살하는 사람에게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도 좋다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민감성을 갖고 보살피는 마음으로 이야기함으로써 당신이 그들을 보살피 주며, 도와주고, 그와 함께 있다는 것을 전하게 된다.

### 3

### 자살의 단서

구 분		단 서
언어적 단서	직접적 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는 죽고 싶다”</li> <li>▪ “나는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어”</li> <li>▪ “더 이상 사는 것이 의미가 없어”</li> </ul>
	간접적 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가 없어지는 것이 훨씬 나아”</li> <li>▪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li> </ul>
행동적 단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랫동안 여행을 떠날 것처럼 주변을 정리 정돈한다.</li> <li>▪ 유서를 써 놓는다.</li> <li>▪ 평소에 아끼던 물건들을 친구들에게 나눠준다.</li> <li>▪ 알코올이나 약물남용이 심해진다.</li> <li>▪ 전에 좋아하던 활동에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li> <li>▪ 학교에서 불안해하며 공부를 제대로 못 한다.</li> </ul>
육체적, 정서적 단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구 관계에 소홀해진다.</li> <li>▪ 식욕 부진</li> <li>▪ 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너무 적게 잔다.</li> <li>▪ 외적 용모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li> <li>▪ 대부분의 증상이 우울증의 증상과 비슷하다.</li> </ul>

### 4

### 대응방법

<p>✔ 평소와 다른 행동은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이라는 걸 깨닫고 무언가 문제가 있음을 알려려는 몸부림이기 때문에 화를 내거나 심한 반박을 해서는 안 된다.</p>
<p>✔ 반드시 당사자가 겪고 있는 문제를 인식하고 기꺼이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의도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p>
<p>✔ 자살을 시도하는 십대는 부모나 가족, 친구로부터 소외되고 고립되었다는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상행동에 대응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의 기저에 있는 원인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p>
<p>✔ 심리상담자, 신경정신과 의사, 청소년 문제 전문가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살을 시도한 원인 규명을 하고 당사자를 보호하고 도와줄 만큼 관심이 있다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해 입원이나 상담이 필요하기도 하다.</p>
<p>✔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과 당사자의 비관적인 느낌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 솔직한 심정을 털어 놓도록 도와준다.</p>



# 학생 인권 연수

금계초등학교

1

## 학생 인권의 이해

- ✓ **인권:**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
- ✓ **학생인권:**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
- ✓ **학생인권조례:** 인권의 개념과 보호의 범위는 계속하여 발전해 왔고, 학생인권의 개념 역시 통제와 훈육을 통한 보호에서 참여 보장과 자기 결정 존중의 개념으로 그 의미와 범위가 확장되어 왔다. 학생인권은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채택과 1991년 국내 비준 등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오랜 논의와 요구 안에서 자리 잡아온 것으로 이러한 노력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로 구체화 되었다. 학생인권조례는 성별·성적 등으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체벌·따돌림 등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 쉽게 풀어쓰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

- 제3조(학생의 인권보장 원칙)** 학생인권은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다만,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학생의 참여로 제·개정된 학교규칙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할 수 있다.
- 제4조(교육공동체 상호간 인권존중)**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은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교는 성별·성적·용모·장애·가족환경·징계 등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교에서의 체벌은 금지되며 따돌림, 집단괴롭힘 등 모든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 학교는 장애·다문화 가정·현장실습·예체능·학습부적응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9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학교는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 제11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학교는 두발길이를 제한하지 않는 등 학생의 개성 실현권을 최대한 보장하되,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학생이 참여한 학교규칙에 따라 일정한 검사와 제한을 할 수 있다.
- 제12조(사생활의 자유)** 학교는 학생의 프라이버시권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나, 위험한 물건의 소지가 의심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학교규칙에 따라 일정한 검사와 제한을 할 수 있다.
- 제14조(정보에 관한 권리)** 학교는 가족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의 학생의 개인 정보가 공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 제15조(양심 종교의 자유)** 학교는 학생의 잘못을 반성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종교 교육의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제16조(의사표현의 자유)** 학교는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7조(자치활동의 권리 등)** 학교는 학생자치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학생이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학교는 학생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보호자에 대한 사전통지, 의견진술권 등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또한 징계는 학생에 대한 응징이 아닌 회복과 복귀를 목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예방 연수

금계초등학교

## 1 아동학대란?

-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 ✓ 아동복지법 제5조 제2항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모를 비롯한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2 가정폭력이란?

- ✓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 ✓ 흔히 신체적 폭력만을 가정폭력이라고 생각하지만, 형법에 규정된 가정폭력범죄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학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 3 체벌은 바람직한 훈육 방법일까요?

- ✓ 체벌은 아동의 측면에서 보면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선택이 그 행위의 가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고통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는 결과가 됩니다.
- ✓ 체벌은 아동의 주체적인 판단에 의한 적극적인 행위를 유발하지 않으며, 아동이 자각하지 않는 한 교육적 효과는 없습니다.
- ✓ 오히려 체벌의 부작용으로 체벌을 가한 사람과의 좋지 않은 인간관계를 만들 우려가 있으며, 아동들은 체벌을 통해 폭력성을 학습하여 학교폭력, 가정폭력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4 아이 중심으로 생각해주세요!

### 아동중심의 양육(아동학대예방)



- 차별 없이 자녀 개개인의 가치와 존엄을 존중해주세요
- 자녀에게 애정과 격려를 통해 긍정적 발달을 도와주세요
- 자녀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도록 해주세요
- 자녀의 성장과 안녕을 위해 부모로서의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세요
- 긍정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가지는 동시에 자녀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고 귀 기울여 주세요

- 아동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 해내갈 수 있도록 적절히 도와주세요
- 자녀의 부적절한 행동을 가족전체 속에서 보려는 노력을 기울이세요 (체벌은 안돼요)
- 자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녀를 중심으로 자녀와 함께 의사결정을 해주세요
- 자녀를 존중하는 권위 있는 부모가 되어주세요
- 자녀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질서나 규칙을 함께 선정하고, 합의하여 지켜 나가도록 도와주세요
- 부모 자신의 긍정적·낙천적·진취적인 삶의 가치들을 자녀에게 전해주는 훌륭한 모델이 되어주세요

## 5

## 아동학대 대처 방법

112로(또는 129, 119) 아동학대 신고를 하면 경찰에 1차 접수 후 지역 아동보호 전문 기관으로 연결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후의 절차를 담당하게 됩니다. 아동학대 발생 시 빠른 개입을 위해 112에서는 24시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혹시 내 이웃에 학대가 의심되는 아이가 있는지 관심 가져 주시고, 이웃과 소통하며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 ✓ 기본적인 의식주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보았을 때
- ✓ 반복적인 상처와 다치는 아동을 보았을 때
- ✓ 보호자가 아동의 상처, 질환에 대한 치료를 거부할 때
- ✓ 잦은 결석 또는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으려 할 때
- ✓ 친족 성 학대, 성매매가 의심되는 아동을 보았을 때



# 반부패 청렴교육(불법찬조금금지)

금계초등학교

## 1 불법찬조금이란?

✓ **불법찬조금**은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청소년단체, 교육활동후원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 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화된 집단 촌지임**

## 2 불법찬조금 유형

- ✓ 학교운영위 심의의결 없이 학부모 등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 ✓ 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유지비, 간식비 등 명목으로 모금하여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 집행
- ✓ 학급 비품 구입, 교직원 선물, 회식비, 학생 간식 제공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 등이 학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조성
- ✓ 학부모 상담기간, 스승의 날, 명절, 운동부 대회 참가 전 후 시기에 감사 또는 격려의 표시로 교사, 운동부 관계자 등에게 전달되는 금품 또는 상품권(모바일 상품권 포함)
- ✓ 금품 등 촌지를 수수한 경우 수수자 뿐만 아니라 제공자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3 불법찬조금 신고처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16.11.30.시행)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법령위반 시[제21조(징계), 제23조(과태료 부과)]

- 공직자 등(교직원) : 징계대상,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대상      - 제공자 :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대상

✓ 경기도교육청의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추진계획』에 따라 불법찬조금 모금과 관련된 사례 발생 시 학교장 등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분받을 수 있고, 학교도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이점을 양지하시어, 불법찬조금의 납부요구가 있을 시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 : [www.goe.go.kr](http://www.goe.go.kr) → 전자민원(클릭) → 부조리신고 및 상담 → 불법찬조금 신고
  - 전 화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 8200-855
  - 공무원 부조리 신고 : 031-2490-999(익명신고)
- 한국투명성기구 : [www.ti.or.kr](http://www.ti.or.kr) → (홈페이지 중앙 하단)한국투명성기구 신문고
-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 [www.hakbumo.or.kr](http://www.hakbumo.or.kr) → 학교길라잡이 → 불법찬조금 및 교육비리(02-393-8900, [hakbumo@hanmail.net](mailto:hakbumo@hanmail.net))
- 금계초등학교 교무실 : 031-902-4503      행정실 : 031-902-4502



# 정보통신윤리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금계초등학교

## 1 정보통신윤리란?

- ▶ 정보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옳음과 그름, 좋음과 나쁨, 윤리적인 것과 비윤리적인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여 행위 하는데 필요한 규범 체계를 말한다.

## 2 정보통신윤리는 왜 필요한가?

- ▶ 사이버 공간을 유익하고, 안전하며, 건전한 공간으로 만들어준다.
- ▶ 정보통신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능력과 태도를 지니게 해준다.
- ▶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비윤리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것을 막아준다.
- ▶ 정보화의 역기능으로 나타나고 있는 불건전 정보 유통 및 컴퓨터 관련 범죄를 예방한다.

## 3 자녀에게 말해주어야 할 인터넷 이용수칙

- ▶ 부모의 허락 없이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절대로 직접 만나면 안 된다.
- ▶ 부모의 허락 없이 부가적인 요금을 내야 하는 정보나 사이트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 ▶ 인터넷에서 자주 만나 친해진 사람이라도 자신의 사진을 전자우편을 통해서 보내서는 안 된다.
- ▶ 인터넷을 통해서 부모의 허락 없이 물건을 주문하거나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 ▶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계획이나 행선지 그리고 현재의 소재지 등을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 ▶ 인터넷상에서는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 학교이름, 비밀번호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는 부모의 허락 없이 절대로 노출시키지 말아야 한다.
- ▶ 폭력적이거나 불건전한 내용의 전자우편이나 의심스러운 제의 등에 대해서는 일체 답장 하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되면 반드시 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 4 자녀에게 개인정보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 ▶ 자신의 ID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타인의 ID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 비밀번호는 누구에게도 알려주거나, 알 수 있게 관리하지 않도록 한다.
- ▶ 개인 정보는 개인의 매우 중요한 정보 재산이므로 소중하게 취급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 ▶ 중요한 파일은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백업을 받아 보관하게 한다.
- ▶ 공공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던 중에 자리를 일시적으로 비울 경우를 대비하여 암호화한 화면보호기를 설정한다.

- ▶ 전자 상거래 정보 및 개인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상대 기업 및 상대 사이트의 이용약관이나 개인 정보 보호 방침 등을 반드시 읽어보고 개인 정보 관리 정책을 확인한 후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가르친다.

## 5 우리아이 네티켓 키우기

- ▶ 자녀들과 함께 적절한 사용 규칙과 가이드라인을 정해라.
- ▶ 온라인상의 적절한 규칙을 만들어 자녀들과 함께 논해보고 주변의 조언도 참고해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하도록 한다.
- ▶ 컴퓨터는 가족이 공유하는 장소에 놓아라. 자녀들의 활동을 지켜볼 수 있게 되어 보다 건전한 정보통신 이용을 유도함은 물론, 부모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다.
- ▶ 자녀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가져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태 모두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녀들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함께 하는 것이다.
- ▶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라. 현재 성인용 사이트를 차단하고 걸러주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다. 자녀들의 인터넷 사용 통제를 위해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도 좋다.
- ▶ 신상자료를 함부로 공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시켜라. 인터넷상의 낯선 자에게 집 주소나 학교명, 전화번호 등 사적인 개인정보를 함부로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시켜야 한다.

## 6 게임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예방 생활지도

- ▶ 게임관련 정부규제 제도

### - 심야시간대의 인터넷 게임 제공시간 제한제도

: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6시간 동안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함. 인터넷 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들은 이 시간대에 연령과 본인 인증을 통해 청소년게임 이용을 강제로 원천 차단해야 함.

### - 게임시간 선택제

: 학생들의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해 부모의 요청에 따라 온라인 게임 서비스 시간을 일부 제한하는 제도.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부모가 요청한 시간에는 게임을 서비스 할 수 없음. 부모님이 자녀의 게임 시간을 정할 수 있고 자녀가 이용하는 게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활용방법 : 게임문화재단([www. gamecheck.org](http://www.gamecheck.org))에서 학생의 게임이용 실태 파악학생과 올바른 게임이용을 위한 활용계획 수립(게임 이용시간, 게임종류)→게임사이트 방문하여 게임시간선택제 이용신청→게임회사는 학생에게 사실 확인 후 게임시간 제한



## ⇒ 방과 후 학교 운영 관련 연수

금계초등학교

### 1. '방과 후 학교' 는

학생, 학부모의 수요와 희망을 고려하여 학생이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고 특기를 신장할 수 있도록 학교 안에서 방과 후에 운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 2. 방과 후 학교의 장점

- ▶ 학교의 시설 및 지역 사회 인적 자원 활용 극대화
- ▶ 학부모에게 과도한 교육비 부담을 주지 않도록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최소화
- ▶ 저소득층에 대한 자유 수강권 제도 활용을 통해 교육 지원 확대

### 3. 운영 기간

- ▶ 1학기 : 2022년 3월 7일 (월) ~ 2022년 8월 19일 (금)
- ▶ 2학기 : 2022년 9월 5일 (월) ~ 2023년 1월 27일 (금)

### 4. 개설 과목 안내

요일	과목	대상 학년	운영 시간	6주 / 4주 수강비	교재, 교구비	장소
월	음악 즐넵기	1-2학년	13:00-14:20	45,000원	없음	본관 4층
		3-6학년	14:20-15:40	/30,000원		강당
	피아노 주 3회 수업 (1일 40분 수업)	1-2학년	13:00-13:40	66,000원 /44,000원	교재 각자 구입 (강사 상담)	본관 4층
		3-4학년	13:40-14:20			방과 후 교실 4
		5-6학년	14:20-15:00			
	코딩 (1일 80분 수업)	1-2학년	13:00-14:20	45,000원 /30,000원	1학기 교재+교구비 55,000원 (강사 상담)	본관 3층
3-6학년		14:20-15:40	컴퓨터실			
화	축구	1-2학년	13:00-14:20	45,000원	유니폼 구입-희망자 (50,000원)	운동장
		3-6학년	14:20-15:40	/30,000원		큰꿈누리 (신관 체육관)
	드럼	전학년	14:10-15:30	45,000원 /30,000원	교재·교구 각자 구입 (강사 상담)	본관 4층 방과 후 교실 4

수	피아노 주 3회 수업 (1일 40분 수업)	1-2학년	13:00-13:40	66,000원 /44,000원	교재 각자 구입 (강사 상담)	본관 4층 방과 후 교실 4
		3-4학년	13:40-14:20			
		5-6학년	14:20-15:00			
	독서 논술	1-2학년	13:00-14:20	45,000원/ 30,000원	없음	본관4층 방과 후 교실 1
		3-6학년	14:20-15:40			
	바이올린	1-2학년	13:00-14:20	45,000원 /30,000원	수업 내 악기 무료 대여, 교재 개인 구매 (강사 공지 예정)	본관 4층 방과 후 교실 3
		1-6학년	14:20-15:40			
	컴퓨터	1-3학년	13:20-14:40	45,000원 /30,000원	학기당 교재비 10,000~15,000원 (강사 상담)	본관 3층 컴퓨터실
		3-6학년	14:40-16:00			
	스포츠 피구	1-2학년	13:00-14:20	42,000원 /28,000원	없음	큰꿈누리 (신관 체육관)
		3-6학년	14:20-15:40			
	미술	1-2학년	13:00-14:20	45,000원 /30,000원	재료비 4주 12,000원	본관 1층 목공 도예실
		3-6학년	14:20-15:40			
	예	주산	1-2학년	12:20-13:40	45,000원	없음
1-6학년			14:10-15:30	/30,000원		
교육 미술		1-2학년	12:20-13:40	42,000원	4주 14,000원	본관 4층 방과 후 교실 2
		1-6학년	14:10-15:30	/28,000원		
생명 과학		1-2학년	12:20-13:40	39,000원	교재+교구비 4주 17,000원	본관 4층 방과 후 교실 1
		3-6학년	14:10-15:30	/26,000원		
쿠키& 클레이		1-2학년	12:20-13:40	42,000원	재료비 4주 12,000원	본관 3층 조리실습실
		1-6학년	14:10-15:30	/28,000원		
피아노 주 3회 수업 (1일 40분 수업)		1-2학년	12:20-13:00	66,000원	교재 각자 구입 (강사 상담)	본관 4층 방과 후 교실 4
		3-4학년	14:00-14:40	/44,000원		
	5-6학년	14:40-15:20				
미	3D 프린터	2-3학년	13:20-14:40	42,000원	재료비 4주 18,000원	본관 3층 컴퓨터실
		3-6학년	14:40-16:00	/28,000원		
	방송 댄스	1-2학년	13:00-14:20	45,000원	없음	본관 4층 강당
		3-6학년	14:20-15:40	/30,000원		
	농구	2-4학년 (초급)	13:20-14:40	45,000원	없음	큰꿈누리 (신관 체육관)
		4-6학년 (중·상급)	14:40-16:00	/30,000원		

## 5.

### 청렴하고 투명한 방과 후 학교 운영

유형	세부 사항
방과 후 학교 게시판	방과 후 학교 연간 운영 계획, 프로그램 수요 조사 결과, 프로그램 현황, 만족도 조사 결과, 방과 후 학교 활동 공개 사항, 수익자 부담 금액 집행 결과 등
방과 후 학교 공개 수업 및 발표회	1학기 1회, 2학기 1회 학교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방과 후 학교 평가로 연계
방과 후 학교 청렴 연수	대상자 : 방과 후 학교 강사, 교직원, 학부모 시기 : 추후 안내

※ 코로나 19 관련 방과 후 학교 운영을 위한 방역 및 대응 기준은 등교 수업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추후 변경 가능



# 특수 및 통합교육 안내

금계초등학교

1.

## ‘다름’을 이해하는 것의 가치

어린 소년이 강아지 파는 가게를 구경하고 있었다. 작은 강아지 5마리가 놓고 있는데 한 마리는 다른 강아지들보다 눈에 띄게 절룩거리고 꼬리가 따로 떨어져 있었다. 소년은 그 강아지를 가리키며 물었다.



“저 어린 강아지는 어디가 아픈가요?”

가게 주인이 대답했다. “이 강아지는 태어날 때부터 다리 관절에 이상이 생겨서 잘 못 걷는단다.”

그 말을 들은 소년은 가게 주인에게

“전 이 아픈 강아지를 사고 싶어요.”

“건강한 강아지도 많은데 왜 하필 이 강아지를 사려고 하니? 돈이 부족하다면 이 아픈 강아지는 그냥 공짜로 주마”

가게主人的 말에 속이 상한 소년은 당당하게 말했다.

“저는 이 강아지가 잘 걷지 못한다고 공짜로 가져가고 싶지 않아요. 이 강아지도 다른 강아지들처럼 똑같이 가치를 지닌 사랑스러운 강아지입니다. 그러니 저는 이 아픈 강아지 값을 전부 내고 사고 싶어요.”

아이의 말에 당황한 가게 주인은 고개를 저었다.

“이런 강아지를 다른 강아지들과 같은 돈을 받을 수는 없어. 달리지 못하고 다른 강아지들처럼 너와 장난을 치며 놀 수도 없단다.”

그 말을 듣자 소년은 몸을 숙여 자기가 입고 있는 바지 한 쪽을 걷어 올리기를 시작했다. 그리고는 허벅지 아래로 반짝거리는 금속 의족으로 지탱하고 있는 자신의 왼쪽 다리를 가게 주인에게 보여주면서 말했다.

“저도 다른 아이들처럼 달릴 수가 없어요. 이 강아지한테는 **자기를 이해하고 공감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제 마음을 알아줄 것 같은 이 강아지가 제일 소중한게 느껴지구요!**”

2.

## ‘모두가 행복한 금계 통합교육

본교는 2020학년도에 특수학급(해누리반)이 신관 1층에 신설하여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어울려 생활하는 통합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3.

## 통합교육의 가치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일반학교에서 또래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합교육을 하면 학교 전체에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 【 통합교육의 가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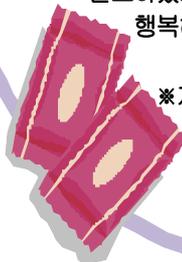
- ①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다름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② 어려움을 겪는 친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려는 태도가 생깁니다.
- ③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좋은 인성과 포용력이 길러집니다.
- ④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일반적인 학교 규칙과 생활하는 방법 및 태도를 익히며 사회성이 향상됩니다.

Tip!!

### ♥ 해누리반 학생들을 만나면...

1. 이름을 부르며 말을 먼저 걸어주세요. 말은 잘 못 해도 고마움과 반가움을 가득 느낍니다.
2. 바른 행동과 말을 해 주세요. 친구들을 좋아해서 그대로 따라하고 싶어 한답니다.
3. 좋은 친구가 되어주세요. 좀 더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값진 우정과 인성은 삶을 행복하게 해 준답니다.

※자녀들에게 말씀해주시면 인성발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 위(Wee)클래스 이용 안내 연수

금계초등학교

## 1.

### 학생들에게 상담이 필요한 이유는?

최근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체계적인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위(Wee) 클래스는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며 학교생활 적응과 심리적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몸에 병이 들면 병원에 가고, 몸을 건강히 관리하기 위해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이 마음에 병이 들어도 병원에 가고, 마음을 건강히 관리하기 위해서 위(Wee)클래스 상담(실)이 있습니다.

#### 위(Wee)클래스의 뜻

위(Wee) 클래스는 학생들의 체계적인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해 추진된 위(Wee) 프로젝트에 따라 학교에 설치된 상담공간입니다. 문제있는 학생들만 이용한다는 기존 상담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누구나 편안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을 수 있는 감성소통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기 위해 위(Wee) 클래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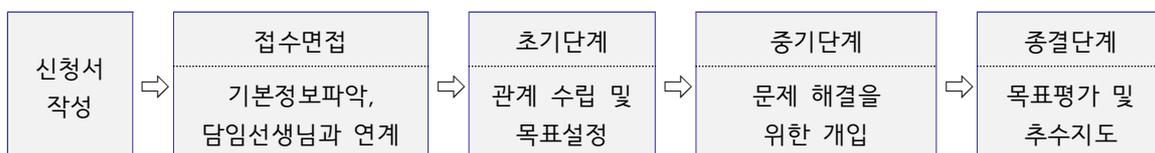
## 2.

### 어떤 학생이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친구 간에 갈등이 잦거나 함께 어울리는 친구가 없는 등 교우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위축되고 자신감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등 관계 및 적응에 갈등을 겪는 학생
- 수업시간에 대부분 엎드려 있거나 집중하지 못하고 단기간에 성적이 하락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학생
- 지각, 조퇴, 결석이 잦고 교칙을 어기는 등 일상적인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되거나 부모님과 갈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
- 우울, 불안 등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
- 자살 및 자해, 학업중단 등의 위기 학생
- 학교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등 피해 경험 후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학생
- 학교환경 변화(전·편입, 복학 등)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 가정환경 변화(이혼, 재혼, 가족상실 등)로 심리적 갈등을 호소하는 학생

## 3.

###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상담신청 방법>

- 1. 신관 5층 위클래스 방문 : 교실 밖 상담신청함이나 위클래스 내에 비치된 상담신청서 작성
- 2. 온라인 상담실 : 카카오톡 채널 '금계초등학교 위클래스 상담실' 로 상담 신청
- 3. 담임선생님께 '위클래스 상담받고 싶어요'라고 말하기

## 4.

## 개인 상담 안내



- 접수상담 후 주 1회, 보통 4~10회기 상담 진행
- 필요시 장기상담 진행
- 학생상담 윤리 준수
  - ▶ 상담내용의 비밀보장에 관한 윤리를 준수합니다.
  -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비밀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이나 안전이 위협한 경우
    - 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
    - 아동학대(가정폭력) 및 학교폭력을 알게 된 경우나 의심하는 경우
    - 전염성 있는 질병을 가지고 있을 경우

## 5.

## 학교 외 연계 지원

### 위(Wee) 프로젝트 기관 연계 지원

위(Wee) 프로젝트는 위(Wee) 클래스, 위(Wee) 센터, 위(Wee)스쿨체계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위(Wee) 클래스에서 1차적 상담을 진행하고 상황에 따라 위(Wee) 센터, 위(Wee) 스쿨에 연계하여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기관	대상	내용
교육지원청 위(Wee) 센터	학생·학부모·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상담, 학교 순회상담, 심리평가</li> <li>• 학교폭력 가해 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li> </ul>
병원형 위(Wee) 센터	심리·정서적 어려움으로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한 중·고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형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치유형 위탁기관 운영</li> <li>• 치료와 회복, 성장 중심의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li> </ul>
가정형 위(Wee) 센터	가정, 학교에서의 위기상황으로 돌봄과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정적인 주거환경 및 돌봄 제공</li> <li>• 위탁형 대안교육 실시</li> <li>•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li> </ul>
위(Wee) 스쿨	장기적인 치유가 필요한 고위기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교육 및 학생관리</li> <li>• 학교교육, 진로, 직업교육</li> </ul>

###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 지원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영역에서 학생을 도울 수 있는 유관기관들이 있습니다. 위(Wee) 클래스는 학생이 겪고있는 어려운 상황에 따라 적합한 지역사회 유관기관에 학생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21학년 학부모회 결산

### 1. 예산 내역

세입	세출	잔액	남은금액
1,000,000	999,380	620	남은 금액은 학교 예산에서 추경 편성 후 교육활동에 사용

### 2. 사용 내역

사용 내역	사용 금액
현관 소망나무 꾸미기 (본관, 별관 현관 앞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	949,380원
협의회비	50,000원
총액	999,380



# 학부모회규정

금계초등학교

2020. 6월 개정

**제1조(목적)** 학부모회는 금계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학부모회의 명칭은 ‘금계초등학교 학부모회’라 한다.

**제3조(기능)** 학부모회는 학교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3.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4. 그 밖에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제4조(회원)** 회원은 본교 병설유치원에 재학하는 모든 유치원생 및 본교 학생의 학부모(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2호)로 한다.

## 제5조(임원의 구성)

- ① 학부모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의 임원을 둔다.
- ②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한다.
- ③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회원 중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의 경우 임원이 아니므로 회장 등이 지명할 수 있다.

## 제6조(임원의 선출)

- ① 학부모회장(임원) 선출
  - 학부모 회장 선출 시 입후보 등록 기간을 정하여 민주적인 절차로 선출한다.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과 학부모 회장에 각각 입후보하여 선출되면 겸임할 수 있다.
  - 부회장, 감사는 회장 선출 방법을 준용하여 선출한다.
  - 등록 기간 내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학부모 총회 및 선출일을 고려하여 입후보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입후보 등록기간을 연장하여도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학부모 총회일에 전체 학부모 회원 중에서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
  - 임원 정수 내 입후보인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② 선출과정

내용	일정	비고
준비위원회 구성	해당년도 일정에 맞추어 추진하며 운영위원회의 일정을 고려하여 추진함 (단, 학부모 총회 안내는 적어도 7일 전에 실시되도록 한다.	- 후보자 등록, 투표 및 개표 등 선출업무
선출공고		- 입후보등록, 임원 선거일시, 장소, 방법 안내
후보자 등록		- 학부모회 임원 입후보 신청
선거공고		-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
투표실시		- 입후보자 소견발표 및 직접 투표
개표		- 투표 마감 후 개표
당선자 공고		- 당선자를 결정하고 당선사실을 공고
선거결과 안내		-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으로 안내

**제7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연도 정기 총회 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②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감사는 학부모회의 회계업무를 학기별 1회 감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④ 부회장이나 감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의원회에서 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학부모회의 조직)**

- ①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회와 대의원회를 둔다.
- ② 학부모회 산하에 유치원 학부모회, 학년별 학부모회와 학급별 학부모회를 둔다.
- ③ 기능별 학부모회에는 녹색어머니회, 도서도우미회, 어머니폴리스, 청소년단체(스카우트) 등이 있으며, 기능별 학부모회는 해당년도의 학교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제10조(총회)**

- ① 총회는 전체 학부모회원으로 구성한다.
- ② 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3월에 소집한다.
- ③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대의원회의 의결로 요구할 때
  3. 회원의 5~1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④ 총회소집은 7일 전에 그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소집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 ⑤ 총회는 회원의 1/10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회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11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 2. 학부모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
  - 3. 임원의 선출
  - 4. 예산 및 결산 보고
  - 5.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 6. 그 밖에 회장이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라 총회에서 학교 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 ③ 학부모회 의결사항 중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2조(대의원회)

- ① 학부모회에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실제 집행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둔다.
- ② 대의원회는 임원, 학년학부모회 대표, 유치원 학년학부모회 대표, 학교 학급학부모회 대표, 유치원학급학부모회 대표, 기능별학부모회 대표로 구성한다.
- ③ 대의원회 회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
- ④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나 재적 대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⑤ 대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 ⑥ 회장이 대의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소집 의제 및 일시, 장소를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⑦ 대의원회 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대의원회의 의결사항)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제10조1항 총회의 의결사항 외에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 2. 제10조1항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
- 3. 임시총회 소집요구

### 제14조(유치원·학년·학급 학부모회)

- ① 학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의 학부모로 구성하고, 학년 학부모 대표는 해당 학년별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 ② 학년 학부모회에서는 각 학년 학생들의 학교생활, 학년운영 등에 대한 건의 및 지원 사항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 ③ 학년 학부모회는 학년 학부모회 대표나 해당 학년 학부모회 회원 1/4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 ④ 유치원 · 학급 학부모회는 제1항~제3항의 학년 학부모회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한다.

**제15조(기능별 학부모회)**

- ① 기능별 학부모회는 총회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할 때,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 ② 기능별 학부모회의 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하며 제11조에 따른 대의원회에 참여한다.

**제16조(해산)**

- ① 학부모회는 학교 통 · 폐합 등의 사유로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 통 · 폐합 일자로 해산한다.
- ② 학부모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항을 알려야 한다.
- ③ 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학부모회의 남은 예산은 학교회계에 귀속된다.

**제17조(청산)** 학부모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제18조(재정지원 등)**

- ① 학부모회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으로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9조(회계연도)** 학부모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같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학부모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2조(학부모 총회의 소집)** 최초의 학부모 총회는 학교의 장이 소집한다.